

제 692 호
1978.12.30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경 상 전
전 점 : 문화공보관 김 인 봉
 전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 제 1298 호 :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3
 - 제 1299 호 : 서울특별시구·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 제 1300 호 : 서울특별시군장심급소유자동차이과세면제
 에 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 4
 - 제 1301 호 : 서울특별시상이용차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
 의과세면제에 관한특별중개정조례..... 5
- 규 칙
 - 제 1788 호 : 서울특별시여비지급규칙중개정규칙..... 5
- 고 시
 - 제 690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변경및지적승인..... 5
 - 제 691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6
 - 제 692 호 :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시행허가..... 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건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8.12.30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㉔

○ 서울특별시조례제 1298 호

건적대통령의주택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건적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2)

가. 일반회계

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

직급별	정원	정원	내	용
2급				
3급갑류	37	행정직 24, 행정 및 토목직 13		
3급을류	232	행정직 104, 행정, 의공 및 보건직 4, 행정 및 토목직 13, 농업직 10, 토목 및 건축직 21		

부 칙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구·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8.12.30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㉔

○ 서울특별시조례제 1299 호

서울특별시구·출장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구·출장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일반회계 "지방공무원정원표"를 (별표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7-4 제 692 호 시 보 1978.12.30

직급별	정원	정원내용
4급갑류	688	행정직 551, 농림직 23, 축산직 2, 행정, 화공 및 보건직 17, 보건직 13, 토목 및 건축직 71, 지적직 6
4급을류	877	행정직 627, 기계 및 전기직 9, 농림직 30, 축산 및 수의직 8, 보건직 29, 토목 및 건축직 156, 지적직 10, 화공직 8
5급갑류	1,235	행정직 920, 기계 및 전기직 19, 화공직 15, 농림직 32, 축산 및 수의직 8, 보건직 20, 간호직 1, 토목 및 건축직 181, 지적직 39
5급을류	1,237	행정직 953, 기계 및 전기직 10, 화공직 1, 농림직 11, 축산 및 수의직 7, 보건직 13, 토목 및 건축직 199, 지적직 43
기능직	21	기계원: 9 등급 1, 운전원: 9 등급 4, 타자수: 9 등급 2, 수위: 9 등급 5, 전기수: 10 등급 6, 전달부: 10 등급 3
고용원	861	수위장 13, 운전원 172, 전공 66, 사진사 3, 기계공 19, 수위 3, 제도사 2, 타자원 125, 교환원 42, 의무원 12, 경비원 4, 대장정리원 37, 감시원 207, 정부 56, 전달부 10, 수로원 17, 노인정관리인 10, 원정 28, 민원보조원 36
합계	5,188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8.12.30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㉔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00 호

서울특별시군장성급소유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중 "1978년"을 "1979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상이용사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8.12.30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01 호

서울특별시 상이용사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상이용사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중 "1978년"을 "1979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여비지급 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8.12.30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 서울특별시규칙 제 1788 호

서울특별시여비지급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여비지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 상시 출장공무원에 해당하는 지급 대상자의 "수도사용료 징수요원" 다음에 "도시가스사용료 징수요원"을 삽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 69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및지체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67 호(78.

9.12)로 결정된 장안동지역에 대하여 일부 변경 및 지적승인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도시계획법 제7조제2항과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의 권한 위임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았다.

1978.12.30
서울특별시장

가. 도로 조 사

구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1		10	60	장안 164-18	장안 165-25	변경 지적승인
"	"	1		10	1,320	면목 1049-41	" 237-2	
"	"	2		8	60	장안 104-9	" 104-31	
"	"	2		8	55	" 131-2	" 131-3	
"	"	2		8	60	" 135-9	" 142-1	
"	"	1		10	570	" 136-8	" 153-10	
"	"	2		8	70	" 167-2	" 167-19	
"	"	1		10	140	" 145-2	" 147-14	
"	"	2		8	80	" 216-11	" 218-5	
"	"	3		6	150	" 234-4	" 237-2	

○ 서울특별시고시제 691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87 호(78.5.1), 서울특별시고시 제 387 호(78.8.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외기동 일원동 2개소 지역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 권한 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았다.

1978.12.30
서울특별시장

가. 도 로 조 서									
구분	등급	구분	번호	특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1		10	220	회기동	61-4	회기동 71-4	
"	"	2		8	260	"	65-77	" 105-33	
"	"	2		8	330	"	62-31	" 65-69	
재결정	중로	1	50	20	1,900	중화동	110	신내동 379-4	
<p>◎ 서울특별시고시제 692 호</p> <p>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시행허가</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규정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아래</p>					<p>와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8.12.30 서울특별시장</p>				
○ 시행허가조서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유통업무설비	영등포구구로동 604-1 번지의		23 필지의		61,810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